

<자료>

## 개정 / 소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0,619호 소방법  
시행령개정령 (11·6 일)

다음은 지난 11월 6일 개정 공포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령을 두번에 나누어 옮긴다.

소방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활동을 함에 있어 유효한 개구부가 없는 층을 말한다.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 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 1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의 특수장소중 다음의 장소

가.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여관·호텔·여인숙·기숙사·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 및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시장·4층이상 공동주택·정거장·대합실·학교·학예전시관·공중목욕장·공장·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창고·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연면적 1천 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 교회·사찰 및 사업장으로서 연면적 1천8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라. 비행기격납고

2. 제1호 각목에 제기하는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면적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

3.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② 건축허가청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기한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3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는 별표 1의 소방대상물중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200인 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천평방미터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동일구내에 제5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이상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제7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

은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8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用に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자
5.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근로안전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7.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 제조소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8.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9. 대통령령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기간 및 과목과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실비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①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화관리자는 시설의 소방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취급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 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계획
2.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통보·피난구·안전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계획
4. 방화구획, 배연 또는 방연구획, 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5. 인원의 수용계획
6. 방화상 필요한 교육계획

7.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사항
8. 화재시의 소화활동·통보연락 및 피난유도등의 훈련계획
9. 증축·개축·수선 또는 구조 변경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의 소방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대상물로 한다.

1. 고층건축물(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극장·영화관·경기장·집회장·호텔·의료원(입원실이 있는 것에 한한다)·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2. 3층이상의 여관·여인숙으로서 방 30실이상이인 것.
3.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인 전문음식점 및 유흥음식점과 지하층에 설치된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

1. 전시용 합판
2. 전시용 섬유판(식물성 섬유를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3.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4. 간이간막이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카텐·암막·카페트(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기타 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 및 식모벽지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버어너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시험체가 녹아 구멍이 뚫리는 물품(카페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 카페트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호, 기타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물품의 잔염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20초 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30초 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제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 내에서 탄화하는 면적을 말한다)은 50평방센티미터 이내

4. 탄화길이(제 1 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 2 호의 잔진시간내에 탄화하는 길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이내
5. 물품의 접염회수(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는 3 회이상 10회이하
- ④제 3 항에 규정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⑤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신청 검사방법·표지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험물·준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①법 제 2 조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이라 함은 별표 2 의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 1 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 물품으로서 별표 3 의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 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 3 장 소방시설 제 1 절 통 칙

**제13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의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
  - 가. 물양동이
  - 나. 소화수통
  - 다. 전조사
  - 라.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물소화설비·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6. 동력소방펌프설비
-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사이렌·방송설비)
-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3. 방열복·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④소화용수설비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기타 소화용수를 말한다.

⑤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말한다.

**제14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구분)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15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별표 1 의 복합건축물은 이장(제21조 및 제22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 개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무창층 또는 3 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제16조** (지하가의 의제) 별표 1 의 제 1 종장소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 제외한다)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소방시설(소화기구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로 본다.

### 제 2 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17조** (제1종장소) 별표 1 의 제 1 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음식점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량의 5 분의 1 이상의 위험물,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 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연면적 2 천100평방미터이상(공연장·경기장·집회장의 경우에는 1 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 1 류·제 2 류 또는 제 5 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 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 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공연장·경기장·집회장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천평방미터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

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호텔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제 4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발전실 및 변전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9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경우 동일대지안에 내화구조건축물·방화구조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

의 건축물로 본다.

6.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 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 5호의 건축물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라.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8.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내화구조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 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시장·여관·호텔·여인숙 및 의료원으로서 연면적 1천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0.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인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의 경우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이상)인 것.

1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인 것.

나. 여관·호텔·여인숙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30인이상인 것.

다.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 및 시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12. 인명구조장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13.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용도별	구분	지하층·무창층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의층
기숙사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공연장·경기장·집회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대지면적이 2만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5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이 2만5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15.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6.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로서 10층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것으로서 연

면적 6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7.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당해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인 부분

나. 옥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다.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승강기 및 환기설비의 기계실·통신기기실·전자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라. 발전실·변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마. 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우트·파이프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바.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18.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제18조 (제2종장소) 별표 1의 제2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4층이상의 공동주택·공장·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의 경우에는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방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교회·사찰의 경우에는 3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교회·사찰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특수 수량의 1천배이상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층 준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4.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 2호 각목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17조제 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교회·사찰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2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라. 소방대상물의 통신기 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절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500평방미터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 한한다)

7.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8.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2) 학교·학예전시관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제기하는 것.

가. 4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나.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다.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것.

10.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구 분	지하층·무창층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 층
용도별	지하층·무창층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 층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정거장, 대합실,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유도표지

11.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정거장·대합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2. 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 4호, 제 5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제 3 종장소) 별표 1의 제 3 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창고로서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로서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창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창고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제 2류·제 4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5.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 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17조제 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라. 소방대상물의 통신기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7.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창고(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로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창고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9.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제20조 (지정문화재) 별표 1의 지정문화재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하고,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지하가) 별표 1의 지하가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총수가 3층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인 것.
  -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40인이상인 것.
6.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8.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700평방미터이상인 것.
9.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 4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복합건축물) 별표 1의 복합건축물(제1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각 용도별 해당수치를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수치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경합하는 층에 있어서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3 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제23조** (소방시설의 면제) ①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주차장이나 별표 3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

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비상벨 또는 자동식사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또는 자동식사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벨이나 자동식사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⑩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 (소방시설작용의 특례) ①별표 1의 제 2종장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8조(소화설비에 한한다)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②소방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3장 제 2절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검정

제25조 (제조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법 제34조제 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화학반응식 포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방염제(방염액·방염도로 및 방염성물질)
3. 동력소방펌프(소방펌프자동차·이동식중형소방펌프·이동식경형소방펌프 및 견인소방펌프를 포함한다)
4. 소방용흡수관 및 소방용호오스
5.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 및 유도등
6. 자동화재 탐지기(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 및 경종) 및 가스화재탐지기
7.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
8. 자동소화기기(유수검지장치·압력검지장치·음향장치·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포헤드·분말헤드 및 살수헤드)
9. 전기화재경보기
10. 자동화재속보기
11. 결합금속구(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제26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범위) ①법 제3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제25조 각호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그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당해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소방시설의 시공

제27조 (소방시설시공의 특례) 법 제30조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소화기의 소화약제충전
2.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및 경보설비의 표시등 또는 유도등의 광원교환
3.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오스·노즐·푸우즈·나사등의 부품교환 및 소화전함·호오스격납함 등의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예비전원 교환

제28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구분에 따라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 제 6 장 화재경계지구등

제2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①법 제4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법 제4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구호훈련

③제 2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계지구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방응원요청) 소방서장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서장에게 소방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 7 장 위험물의 취급

##### 제 1 절 통 칙

제32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2에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33조 (저장소의 구분)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옥내저장소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제 4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제 4호 내지 제 6

호에 제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제 5호에 제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7. 옥외저장소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중 유황, 제 4 류의 위험물중 제 2 석유류·제 3 석유류·제 4 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8. 선박탱크저장소 : 선박(선박안전법 제 2조제 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며, 부선을 포함한다)안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제34조 (취급소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2.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 가. 제 1종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5 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 나. 제 2종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5 배이상 20배미만(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3.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버어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제35조 (2 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 품목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각 품목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제 2 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36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도면 및 지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3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완공검사의 신청)** ①법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탱크의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은 후 제 1항의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양수시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 제 3 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39조 (공통기준)** 법 제1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 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직원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함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찌꺼기등은 1일 1회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안에 온도계·습도계 기타의 계기를 비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용기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고 파손·부식·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작은 가루가 떠돌아 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 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여 불꽃을 발하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유별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중 위험물의 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2의 제 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있는 과열·충격·마찰등을 피하여야 하며,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 고온체에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금속분 에이 및 금속분 비이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별표 2의 제 3류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에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별표 2의 제 5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에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41조 (저장의 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

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계기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건축물의 내벽으로부터 0.5미터이상,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 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중 탱크의 직근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위험물을 이송할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방유제의 내부에 피어있는 기름 또는 물을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을 결합불량, 변형 또는 주유호오스의 파손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밑 밸브는 사용시 이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피견인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피견인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하여 두어야 한다.
9.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알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기타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2류 위험물중 유황을 저장하는 경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